



고용 · 산재보험

2018년도(귀속)

# 보수총액신고 안내



## Contents

보수총액신고 쉽고, 간편하게!	02
보수총액신고서 작성방법	04
보수총액 전자신고 안내	10
주요정보 및 정책 안내	16

신고기한 **2019년 3월 15일(금)**

# 보수총액신고 쉽고, 간편하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보수총액신고란?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19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해  
① 근로자가 없어도, ② 이미 퇴사했어도, ③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보수총액신고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10인 미만 사업장도 발급해드린 임시아이디로 신고 가능합니다.  
※ 2019. 3. 31.(일)까지 임시아이디 사용가능 단,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성실신고 안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 부과 또는 부과지시사업장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얼리버드 "Early-Bird" 경품 대축제**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쉽고 간편하게 토탈서비스(전자신고)로!!!  
법정신고기한보다 빨리 신고하면 당첨확률 UP!!!

| 행사기간 | 보수총액신고 '19.02.01. ~ '19.03.08.  
보험료신고 '19.03.04. ~ '19.03.26.

| 경품 | 스마트폰, 태블릿PC,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 등 800여명

###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서 입력 및 접수

- ① 토탈서비스 접속(로그인) ▶ ② 빠른서비스 → 보수총액신고 ▶
- ③ 고용관리/보수관리 → 비밀번호 설정(입력) ▶ ④ 보수총액 입력 ▶
- ⑤ 저장 ▶ ⑥ 신고 자료 검증 ▶ ⑦ 접수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확인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서비스의 팝업존,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방법

① 보험료부과구분	05	⑦, ⑧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07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05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수(⑦, ⑧)	08
②, ③ 연간보수총액	06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08
③-1 근무지코드 - 우편번호	06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08
④ 근로자 사용 및 보수 지급액 없음	06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09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일반사업장	07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09
⑥-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07		

## 2018년(귀속) 보수총액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시)

신고기한은 3.15(금)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0502-123-4567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18)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토탈 임시아이디 : \*\*\*\*\* (암묵)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최종생산물( )	팩스번호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1				Y( )							
2				Y( )							
3				Y( )							
4				Y( )							
5				Y( )							
6				Y( )							
7				Y( )							
8				Y( )							
9				Y( )							
합계											

④ (2018)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 ) (해당시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구분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아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 )	( )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 선납충당, ( ) 반환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사업장 현황 : 산재·고용보험 성립사업장 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시)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18)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은 3.15(금)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0502-123-4567

토탈 임시아이디 : \*\*\*\*\* (암묵)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최종생산물( )	팩스번호	

### ◎ 토탈 임시아이디 (<http://total.kcomwel.or.kr>)

토탈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19. 3. 31.까지는 "임시아이디"를 사용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법인)의 일반 공인인증서가 필요(토탈서비스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대리인인증 신고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

### ◎ 작성자명 및 전화 :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현황(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보험료부과구분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1				Y( )			

### ◎ 보험료부과 구분부호 :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	○	×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향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	×	×	×	향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시간선택제제공무원(2018.9.21.이후 산재 제외)
54	○	×	○	○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	×	○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	×	○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2018.9.21.이후 산재 제외)
58	○	×	×	○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59	○	○	○	○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 ■ 공무원연급법 개정(2018.9.21.)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2018.9.21.이후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대상

###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틀린 근로자의 처리방법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1 (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2018년도에 자신신고사업장과 부과지사사업장 근무이력자가 있는 근로자

※ 2018년도에 동일 법인(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내 자신신고사업장과 부과지사사업장에 각각 근무기간이 있어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을 나눠서 신고해야 근로자의 경우 "①-1" 항목 Y( )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사용한 사업장(건설기계 관리 사업 (40010))의 보수총액신고는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항목의 Y( )'에 체크하여 **하도급 건설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설현장에 투입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총액신고 하셔야 합니다.)

### ②, ③ 연간보수총액

산재보험			③-1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② ~ ③ (연간보수총액) 2018년도에 발생한 근로자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㉞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⑩-11, ⑩-14, ⑩-15, ⑩-16, ⑩-31)**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 ③-1 근무지코드(우편번호)

신고연도 마지막날(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은 소멸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상실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중인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근무지코드 작성요령

- 신고연도 마지막날 기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중인 지역(사업장)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는 경우 토달서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별로 각각 근무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에는 본사 근무지코드를 기재하였으나 본사 이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무지코드에 진하게 덧쓰기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근무지코드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④ 근로자 사용 및 보수 지급액 없음

④ (2018)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 ) (해당시  표시)

2018년도에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괄호 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 받으며 단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할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일반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2018년도에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②~③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한 근로자,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⑥-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고용보험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일반사업장과 같이 2018년도에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가.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부터 근로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방법

- 실업급여 :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에서 ⑥-1(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을 뺀 보수총액 [⑥-(⑥-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⑥(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 [⑥]

### ⑦, ⑧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연간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연간보수총액(②,③),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⑤, ⑥, ⑥-1)과 구분하여 신고하는 항목으로 누락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구분

구분	설명	적용 범위		예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미만)	산재	당연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고용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일 또는 시간단위의 고용계약 - 일급 형식으로 보수 지급	산재	당연적용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 업무를 하는 근로자
		고용	당연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3.이후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당연 가입

##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수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 2018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②~③ 상용근로자는 제외)

##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분 (아래 ✓ 표시)	기간(변경 전 ~ )	기간(변경 후 ~ )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고용		

⑩ (산재보험 업종) 2018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이 변경된 경우, 연간보수총액 (②합계액+⑥+⑦+⑧)을 변경 전 ·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고용보험 직능요율) 2018년도 중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경우, 연간보수총액 (③합계액+⑥)을 변경 전 ·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2018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기간이 인쇄된 사업장만 적습니다.

##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괄호 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빠른서비스 및 팝업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 2018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 선납충당에 체크(✓)하고, 충당없이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체크(✓)하고, 반환계좌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 ⑬ 자활근로증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부분	①-1 (산재) 건설, 별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③-1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1				Y( )				
2				Y( )				
3				Y( )				

⑬ (자활근로증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자활근로증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 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보험료 부과부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 노조전임자의 보험료 부과부분 부호 미신고 또는 착오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처리완료 후 콜센터(1588-0075)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에 인쇄된 근로자가입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처리요령

- 고용종료신고 누락근로자(17.12.31.이전 퇴사) : 고용종료(상실)신고서 제출→(처리완료)→보수총액신고
- 고용(취득)신고 누락근로자 : 고용(취득)신고서 제출→(처리완료)→보수총액신고

## 2019년 근로자 가입정보 전자신고 경품행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는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전자신고하면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응모기간 2019.1.1. ~ 12.15.

참여대상 토탈서비스 및 고용보험EDI를 통해 근로자고용(취득)신고, 고용종료(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

경품내용 1만원 모바일 기프티콘 / 대상인원 총 1,200명(매월 100명 추첨)

참여방법 근로자고용(취득)신고, 고용종료(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 후 응모 절차를 거쳐 참여  
※ 응모자의 휴대전화번호(당첨안내 및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등 개인정보 내용 및 활용 동의 등 수집

추첨일 매월 20일(당월 15일까지 접수된 건 중 선정) / 당첨자발표 매월 25일 10:00



### ③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확인하기

- 가 고용관리/보수관리비밀번호 확인 클릭 → 나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다 로그인 ID / 비밀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라 로그인 비밀번호와 고용관리/보수관리의 신규 비밀번호 입력
- \* "자주묻는 질문"에 [비밀번호]로 검색하여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임시아이디로 로그인시 비밀번호 불필요)

### ④ 연간보수총액 신고하기(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

- 가 화면 입력 방식 → 나 보수총액신고대상자 자료조회 → 다 (산재·고용) 연간보수총액 입력
- 아 엑셀파일 불러오기 → 비 (일반·자활) 신고대상자 파일 다운로드 및 (산재·고용) 연간보수총액 입력 → 씨 작성파일 불러오기
- \* (산재·고용)연간보수총액은 2018년도에 발생한 근로자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6p참고)

### 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입력하기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 중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주의사항 :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에 임의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공제하면 안됨.

### ⑥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상단의 일반근로자 제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고 0명인 경우 0을 기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복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 ⑦ 산재보험 업종·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2018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이 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 ⑧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4항에 따라 월보험료를 초과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2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납 신청

※ 체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빠른서비스 및 팝업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정산 후 과납보험료 총당신청 및 반환

### ○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앞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부동의

## ⑩ 임시저장 · 접수

<p>정보</p> <p>임시저장 하시겠습니까?</p> <p><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취소"/></p>	<p>정보</p> <p>사전검검 결과 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류 수정 후 다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button" value="확인"/></p>	<p>정보</p> <p>접수하시겠습니까?</p> <p><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취소"/></p>
<p>● 입력한 보수총액 내용을 저장합니다.</p> <p>■ 오류 데이터지만 접수가능 ■ 접수 불가능한 오류, 반드시 수정</p>	<p>● 입력한 정보를 사전검증합니다.</p>	<p>● 검증이 완료된 자료를 접수합니다.</p>

## ⑪ 보수총액신고 접수현황 조회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을 조회합니다.



사업장 회원

반갑습니다.  >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보수총액보험료신고접수현황조회**

> 마이메뉴 등록

> 회원정보수정

> 회원탈퇴

> 고용보험 미승인하수급인 접수현황 조회

신정하기

마이페이지 > 보수총액보험료신고접수현황조회

키보드 사용자는 해당기능을 선택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보수총액(수정)신고서, 보험료신고서에 대한 접수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른 민원서류는 조회불가)
- 민원서류 상세내역(진행상황) 정보는 보수총액(보험료)신고 민원접수 검증기간(신고마감일 전후 5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민원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입력 접수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민원접수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 총액신고/보험료신고 민원접수 검증기간으로 인하여 접수량 증가(파일전송시간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드리고 시간을 두고(익일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접수일자\* 2019-01-25 ~ 2019-01-31 1주일 ○ 접수

▶ 세부조건 검색조건 선택

\* 총 조회건수 2건

접수일	접수번호	신청민원서류명	관리번호	구분	진행상황	서식출력	경통행사
2019-01-31		보험료신고서	확인	산재	고용	접수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참여"/>
2019-01-31		보수총액 신고서	확인	산재	고용	접수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참여"/>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 ⑫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경품응모 하기

접수완료 후 2019년 보수총액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에 응모하세요.



접수완료

\* 접수번호(510020194000000)의 상세내역

접수번호	진행상황	처리지사	담당자	처리완료일
510020194000000	접수	○○지사	홍길동	2019.2.23

보안원자

\* 접수번호(510020194000000)의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참여

경품행사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 입력하신 정보는 경품당첨 안내 및 발송 등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세공과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 당첨된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부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주요정보 및 정책 안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www.kcomwel.or.kr>

## 부과고지사업장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부과고지사업장의 정산보험료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 : 기존(다음연도 3.16) → 개정(다음연도 초일) ※ 시행일 : 2019. 1. 15.

## 과납보험료 충당 범위 확대

과납보험료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순위로 충당할 수 있으며, 2019년 부터 고용보험 과납보험료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환수금'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충당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9. 1. 15.

## 65세 이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실업급여 적용 안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19. 1. 15. 이후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안내

- 건설업·별목업 외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및 일용근로자신고내역으로 산정)
- 건설업 : 2년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 산재보험 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급승인금액으로 산정)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란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서비스」 안내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절차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민원접수/신고→사무대행업무→보험사무 위탁신청서→회원 또는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 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접수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가입·납부서비스→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구분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지원제한 기준	근로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
지원기간	기가입자 (40%)	-	'20년까지만 지원하고 '21년부터 지원 중단
	공통	'18. 1. 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만 지원	

※ '19년도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의 지원율은 '18년도와 동일  
 - 신규가입자 : 80%(5명~10명 미만 사업) ~ 90%(5명 미만 사업), 기가입자 : 40%

※ 사업규모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

- ▶ 2019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원)

##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자영업자라면!	가입대상	혜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li> <li>• 금속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li> <li>* '19.1.1.부터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도 가입 가능</li> </ul>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후 5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기준)인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li> <li>* 고유번호증 보유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가입제한</li> </ul>	실업급여(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하는 경우)와 직업훈련 비용 지급

## 근로자휴양콘도지원

### 신청대상

평일 - 모든 근로자 (월평균 소득 251만원 초과자 포함)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사업주(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신청방법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이용료

1박 기준 55,000 ~ 194,000원

### 이용가능지역

설악, 양평, 경주, 제주 등 전국 46개소 (한화, 대명 등)



# 사장님~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

-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까지 지원(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 ◆ 지원금액 상향  
- 1인당 최대 월 13만원 →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인 미만 사업주
-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

- ◆ 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
- ◆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휴·폐업 사업주,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5만원)
- ◆ 단시간 노동자,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일수 비례 지원
- ※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 신청절차

-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같이 받으세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 '19년도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 경우, 보험료의 60% 경감 (5~30인 미만은 50% 경감)
- ◆ 4대 보험 신규가입시 10인 미만 고용 기업의 사용자 보험료 일부담금 50% 세액공제



## 제40회 문화예술제 안내

'더 많은, 더 새로운, 더 행복한' 끼와 열정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참가분야	가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	영화제
신청기간	2019년 2월		2019년 7월		2019년 5월
총 시상금	12,460만원				

참가자격 : 근로자라면 누구나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산재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1.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 산재보험 평균요율이 2018년 1.65%에서 2019년 1.50%로 전년대비 0.15%P 인하  
- 출·퇴근 재해요율은 전년과 동일(1.5/1,000)
2. 개별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건설은 60억 이상  
- 수지율 증감폭 ±20%  
- 수지율 산정시 모든 업무상 질병을 제외
3.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급여징수금 부담완화



## 기업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복지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컨설팅 분야

- 선택적복지제도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퇴직연금사업

가입문의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검색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공)

###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 ▶ 기업도산에도 퇴직급여 지급권이 보장됩니다.
-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적립운용 방식의 선택 및 퇴직 시 연금 VS 일시금 선택 수행 가능합니다.
-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자원 보존합니다. : 이직을 하여도 퇴직 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1.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
2.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3.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4.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에서 적립금 자산관리

# 2019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엘리버드 “Early-Bird” 경품 대축제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쉽고 간편하게 토탈서비스(전자신고)로!!!  
법정신고기한보다 빨리 신고하면 **당첨확률 UP!!!**

| 행사기간 | 보수총액신고 '19.02.01. ~ '19.03.08.  
보험료신고 '19.03.04. ~ '19.03.26.

| 경품 | 스마트폰, 태블릿PC,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 등 800여명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수총액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자세한 사항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종합소득세 신고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를 참고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DM발송 신고서식, 회계 프로그램 서식, 콜센터에 재요청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QR코드가 삽입되어 빠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토탈서비스 사업장 규모별 분산 운영 안내

구분	사무대행기간	사업장별 근로자수		
		30명 이하	31명 ~ 300명	301명 이상
파일다운로드	2.1 ~ 2.15	2.18 ~ 2.22	2.25 ~ 2.28	3.4 ~ 3.8
신고일	2.1 ~ 2.22	2.28 이전	3.8 이전	3.13 이전

※ 토탈서비스 접속이 일시에 집중되어 전산과부하가 발생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위와 같이 파일 다운로드 및 신고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산하여 운영중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정·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부패·공익  
신고는**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마당 → 신고센터
-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http://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
- ▶ 청렴신문고([1398.acrc.go.kr](http://1398.acrc.go.kr))
- ▶ 공익신고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팩스신청 044-200-7972

